

CTM평생교육원 미술심리상담사 윤리강령

전 문

CTM평생교육원은 본 원에 속한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을 가진 회원들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심리치료 이론과 미술기법을 접목시킨 조력활동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독창성을 신장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건전한 삶을 살도록 돕는 데 헌신한다. 본 원에서 인증한 미술심리상담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며, 전문가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또한 내담자의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본 원에서 인증한 미술심리상담사 다음과 같은 윤리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전문가로서의 태도

가. 전문적 능력

- (1) 미술심리상담사는 자기 자신의 교육과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이나 훈련, 경험을 통해 자격이 주어진 활동만을 한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오도되었을 때에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 (3)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한다.
- (4) 미술심리상담사는 정기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평가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
- (5) 미술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나. 성실성

- (1)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하고, 내담자에게 상담의 목표, 기법, 한계점, 위험성, 상담의 이점, 자신의 강점과 제한점, 심리검사와 보고서의 목적과 용도, 상담료, 상담료 지불방법 등을 명확히 알린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3) 미술심리상담사는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미술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 (4)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질병, 죽음, 이동, 또는 내담자의 이동이나 재정적 한계 등과 같

은 요인에 의해 치료를 중단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치료를 종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유보다도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의뢰한다.
- (6)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나 학생, 연구 참여자, 동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7)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거나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다. 미술심리상담사 교육과 연수

-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학술적인 연구와 지도 감독하의 실습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2)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기본적인 기술개발, 진로 전망에 대해 알려 준다.
- (3)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과 사회를 위하는 이상적 가치를 교육생들에게 고무해야 하며, 재정적 보상이나 손실보다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인간애에 더 가치를 두도록 한다.
- (4)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제시하여, 교육생들이 이 이론들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5) 교육 프로그램은 원의 최근 관련 지침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 (6)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에서는 교육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생들의 한계를 알아내야 한다. 교육 지도자는 교육생들이 치료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람직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 (7) 미술심리상담사는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윤리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교육생들이 윤리적 책임과 윤리강령을 잘 인식하도록 돕는다.
- (8) 미술심리상담사는 치료성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내담자 또는 수련생과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다.
- (9) 미술심리상담사가 교육목적으로 저술한 교재는 교육과 연수과정에 채택할 수 있다.

라. 자격증명서

- (1) 본 원에서 인증한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자격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자격증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2. 사회적 책임

가. 사회와의 관계

- (1) 미술심리상담사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기준을 존중하고,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전문적 활동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한다.
- (3) 치료비용은 내담자의 재정 상태와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책정된 상담료가 내담자에게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가능한 비용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줌으로써 내담자를 돕는다.

나. 고용 기관과의 관계

- (1)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종사하는 기관의 목적과 방침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근무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담업무, 비밀보장, 공적 자료와 개인자료의 구별,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분, 업무량, 책임에 대한 상호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
- (3) 미술심리상담사는 그의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나, 기관의 효율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경고를 해주어야 한다.
- (4) 미술심리상담사의 인사배치는 내담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고용기관의 운영자

- (1) 고용기관 운영자는 다음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자격증의 유형, 주소, 연락처, 직무시간, 그와 관련된 다른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2) 고용기관 운영자는 자신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발전에 책임이 있다.
- (3) 고용기관 운영자는 직원들에게 기관의 목표와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 (4) 고용기관 운영자는 고용, 승진, 인사, 연수 및 지도 시에 나이, 문화, 장애, 성, 인종, 종교,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5) 미술심리상담사는 다른 미술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력 체제를 맺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기관의 특수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6)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개업활동에 대해 내담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원나 연구단체의 회원임을 거론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 (7) 내담자나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 개인치료소를 고용이나 기관 가입의 장소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 (1)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방식과 다른 전문적 접근을 존중해야 한다. 미술심리상담사는 함께 일하는 다른 전문적 집단의 전통과 실재를 알고 이해해야 한다.
- (2)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말할 경우, 미술심리상담사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고, 모든 미술심리상담사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 (3)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내담자의 동의 하에 치료 사실을 그 전문가에게 알리고,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치료관계를 맺도록 노력한다.

(4) 미술심리상담사는 다른 전문가로부터 의뢰비용을 받으면 안 된다.

마. 자문

- (1) 자문이란 개인, 집단, 사회단체가 전문적인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여 요청한 자발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미술심리상담사는 자문을 요청한 내담자나 기관의 문제 혹은 잠재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 (2) 미술심리상담사와 내담자는 문제 규명, 목표 변경, 성과에 서로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 (3)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자문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 (4) 자문을 할 때 개인이나 기관의 가치관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미술심리상담사 자신의 가치관, 지식, 기술, 한계성이나 욕구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하고, 자문의 초점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풀어나가야 할 문제 자체에 두어야 한다.
- (5) 자문 관계는 내담자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고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술심리상담사는 이러한 역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고, 내담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6) 상담활동에서 자문의 활용에 대해 홍보할 때는 원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바. 홍보

- (1) 미술심리상담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거짓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출판업자, 언론인, 혹은 스폰서 등이 치료의 실재나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 (3) 미술심리상담사가 워크샵이나 훈련프로그램을 홍보할 때는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하게 홍보해야 한다.

3. 인간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가. 내담자 복지

- (1) 미술심리상담사의 일차적 책임은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며,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미술심리상담사는 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미술심리상담사의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 (4)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가족이 내담자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 (5) 미술심리상담사는 직업 문제와 관련하여 내담자의 능력, 일반적인 기질, 흥미, 적성,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내담자와 함께 노력하지만, 내담자의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근무처를 정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다양성 존중

- (1) 미술심리상담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인 선호,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미술심리상담사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상담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 (3)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인식하여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에서 적용되는지를 깨닫고 있어야 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 내담자의 권리

- (1) 내담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치료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리,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치료에 참여 여부를 선택할 자유와 전문가를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내담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제한점은 내담자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
- (3) 미성년자 혹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내담자일 경우, 미술심리상담사는 이런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

4. 상담관계

가. 이중 관계

- (1) 미술심리상담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 관계는 피해야 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등을 내담자로 받아들이면 이중 관계가 되어 전문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준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치료 이외의 다른 관계가 있다면, 특히 자신이 내담자의 상사이거나 지도교수 혹은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라면 그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불가능하고, 내담자의 상황을 판단해 볼 때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면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 (3) 미술심리상담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치료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도록 한다.
- (4)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치료비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나. 성적 관계

- (1)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어떠한 종류이든 성적관계는 피해야 한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이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미술심리상담사는 관계가 종결된 이후 최소 2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종결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도 미술심리상담사는 이 관계가 착취적인 특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다. 여러 명의 내담자와의 관계

- (1) 미술심리상담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둘 혹은 그 이상의 내담자들(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동의할 경우, 미술심리상담사는 누가 내담자이며 각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될지 그 특성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시작해야 한다.
- (2) 만약 그러한 관계가 미술심리상담사로 하여금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면, 미술심리상담사는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하거나, 조정하거나, 그 역할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5. 정보의 보호

가. 사생활과 비밀보호

- (1) 미술심리상담사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는 내담자나 내담자가 위임한 법적 대리인에 의해 유예될 수 있다.
- (3)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서 및 구두상의 보고서나 자문 등에서 실제 의사소통된 정보만을 포함시킨다.
- (4) 미술심리상담사는 고용인, 지도감독자, 사무보조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나. 기록

- (1) 법, 규제 혹은 제도적 절차에 따라,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녹음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 (3) 미술심리상담사는 면접기록, 심리검사자료, 편지, 녹음 녹화 테이프, 기타 문서기록 등 서비스와 관련된 기록들이 내담자를 위해 보존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록의 안전과 비밀보호에 책임진다.
- (4) 고용기관이나 연구단체는 기록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록은 미술심리상담사가 속해있는 기관이나 연구단체의 기록으로 간주한다.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가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내담자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내담자가 여

러 명인 경우, 다른 내담자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 (5) 미술심리상담사는 기록과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가 자신의 죽음, 능력상실, 자격박탈 등의 경우에도 보호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 (6) 미술심리상담사는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담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 (7) 미술심리상담사는 다음에 정한 바와 같이 비밀보호의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 삼의 개인, 단체에게 상담기록을 밝히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다. 비밀보호의 한계

- (1)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가인 사회에 알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시작 전에 이러한 비밀보호의 한계를 알려준다.
-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때, 미술심리상담사는, 그 질병에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제 삼자(내담자와 관계 맺고 있는)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미술심리상담사는 제 삼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알렸는지, 아니면 조만간에 알릴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3)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에는 비밀보호의 원칙에서 예외이지만, 법원이 내담자의 허락 없이 사적인 정보를 밝힐 것을 요구할 경우,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요구하지 말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 (4) 상황들이 사적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때 오직 기본적인 정보만을 밝힌다. 더 많은 사항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적인 정보의 공개에 앞서 내담자에게 알린다.
- (5) 만약 내담자가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면, 팀의 존재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 (6) 시작될 때와 과정 중 필요한 때에,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비밀 보호의 한계를 알리고 비밀 보호가 불이행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시킨다.
- (7) 비밀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 미술심리상담사는 동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라. 집단상담과 가족상담

- (1) 집단상담에서 미술심리상담사는 비밀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집단에서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어려움들을 토론한다. 집단 구성원들에게 비밀보호가 완벽하게는 보장될 수 없음을 알린다.
- (2) 가족상담에서 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허락 없이는 다른 구성원에게 공개될 수 없다. 미술심리상담사는 각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 (3) 자발적인 언행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인 내담자일 경우 필요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린다. 그러나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마. 기타 목적을 위한 내담자 정보의 사용

- (1)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치료관계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각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자료 변형 및 신상 정보의 삭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내담자의 신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 (2)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경우, 미술심리상담사는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바. 전자 정보의 비밀보호

- (1) 컴퓨터를 사용하면 광범위하게 자료를 보관하고 조사·분석 할 수 있지만, 정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2) 내담자의 기록이 전자 정보 형태로 보존되어 제 3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 미술심리상담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6. 상담연구

가. 연구계획

- (1) 미술심리상담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연구가 잘못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연구를 계획한다.
- (3) 연구를 계획할 때, 미술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에 따라 하자가 없도록 한다. 만약 윤리적 쟁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미술심리상담사는 윤리위원회나 동료의 자문 등을 통해 쟁점을 해결한다.
- (4) 미술심리상담사는 최선을 다해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미술심리상담사는 국가의 법과 기준 및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는 태도로 연구를 수행한다.

나. 책임

- (1) 미술심리상담사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 대상자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연구 대상자를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불편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자기 자신 혹은 자기 감독 하에 수행된 연구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 (3)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는, 훈련받고 준비된 과제만을 수행해야 한다.
- (4)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 숙련된 연구자의 자문을 구한다.

다. 연구 대상자의 참여 및 동의

- (1) 연구에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비자발적인 참여는 그것이 연구 대상자에게 전혀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관찰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연구 대상자를 구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유인가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 (3) 미술심리상담사는 연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 절차 및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한 후에 연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미술심리상담사는 모든 형태의 촬영이나 녹음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 미술심리상담사는 정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이 연구와 관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특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연구의 특성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에는 연구가 끝난 뒤 가능한 한 빨리 사실 그대로를 알려 주어야 한다.
- (6) 미술심리상담사는 연구 대상자의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위험, 불편함, 불쾌한 정서적 경험 등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라. 연구결과 및 보고

- (1) 미술심리상담사는 연구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결과나 결론 등을 제공한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연구 결과를 출판할 경우에 자료를 위조하거나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 (3)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미술심리상담사는 그러한 오류에 대해 수정, 철회, 정정하여야 한다.
- (4) 미술심리상담사는 타 연구의 결과나 자료의 일부, 혹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자주 인용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 (5)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 및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책임과 공로를 갖는다.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한 자는 공동 연구자로 하거나, 공인을 해주거나, 각주를 통해 밝히거나, 혹은 다른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그 공헌에 맞게 인정해주어야 한다.
- (6)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연구결과는 다른 미술심리상담사들과 상호 교환해야 하며, 연구결과가 연구소의 프로그램, 활동, 기존 관심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
- (7)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연구를 제 3자가 반복하기 원하고, 그만한 자격이 있으면, 연구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단 연구 대상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8) 미술심리상담사는, 이미 다른 논문이나 출판물에 전체 혹은 일부분이 수록된 원고를 전 출판사의 승인이나 인가 없이 이중발표하지 않는다.

7. 심리검사

가. 기본 사항

- (1) 교육 및 심리 평가의 주된 목적은, 객관적이면서 해석이 용이한 평가도구를 제공하는데 있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교육 및 심리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복리와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 (3) 미술심리상담사는 평가결과와 해석을 오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출판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정보를 오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 (4) 미술심리상담사는, 검사결과에 따른 미술심리상담사들의 해석 및 권유의 근거에 대한, 내담자들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 (5) 미술심리상담사는 규정된 전문적 관계 안에서만 평가, 진단, 서비스, 혹은 개입을 한다.
- (6) 미술심리상담사의 평가, 추천, 보고, 그리고 심리적 진단이나 평가 진술은 적절한 증거 제공이 가능한 정보와 기술에 바탕을 둔다.

나. 검사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능력

- (1) 미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훈련받은 검사와 평가만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미술심리상담사는 지도감독자로부터,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를 제대로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 (2)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를 활용하는 미술심리상담사는, 원 평가 도구에 대해 훈련받아야 한다.
- (3) 수기로 하든지, 컴퓨터를 사용하든지, 미술심리상담사는 평가 도구의 채점, 해석과 사용, 응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 (4) 미술심리상담사는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에 대한 연구 및 검사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지침 등 교육·심리적 측정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5) 미술심리상담사는 평가 도구나 방법에 대해 언급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능지수나 점수 등이 근거 없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6) 미술심리상담사는 심리 평가를 무자격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다. 사전 동의

- (1) 평가 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미리 얻지 않았다면, 미술심리상담사는 그 평가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결과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야 한다. 채점이나 해석이 미술심리상담사나 보조원에 의해서 되었든, 아니면 컴퓨터나 기타 외부 서비스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든지,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내담자의 복지, 이해 능력, 그리고 사전 동의에 따라 검사 결과의 수령인을 결정짓는다. 미술심리상담사는 어떤 개인 혹은 집단 검사결과를 제공할 때 정확하고 적절한 해석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라. 유능한 전문가에게 정보 공개하기

- (1) 미술심리상담사는 검사 결과나 해석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오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의 오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나 내담자가 위임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그 내담자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자료(예를 들면, 계약서, 인터뷰 기록, 혹은 설문지)를 공개한다. 그와 같은 자료는 그 자료를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미

술심리상담사가 인정하는 전문가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

마. 검사의 선택

- (1) 미술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 타당도, 신뢰도, 검사의 적절성, 제한점 등을 신중히 고려한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다문화 집단을 위한 검사를 선택할 때, 사회화된 행동과 인지 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바. 검사 시행의 조건

- (1) 미술심리상담사는 표준화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가 표준화된 조건에서 시행되지 않거나, 검사 시간에 비정상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그 검사 결과는 무효 처리하거나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컴퓨터나 다른 전자식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시행 프로그램이 내담자에게 정확한 결과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 (3) 인사, 생활지도, 상담활동에 주로 활용되는 검사결과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검사내용에 대한 선수지도나 내용을 언급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검사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미술심리상담사의 책임이다.

사. 검사 점수화와 해석, 진단

- (1) 미술심리상담사는 검사 시행과 해석에 있어서 나이, 인종, 문화, 장애, 민족, 성, 종교, 성적 기호,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고려하고, 다른 관련 요인들과 통합 비교하여 검사 결과를 해석한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기술적 자료가 불충분한 평가 도구의 경우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한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특정한 목적을 내담자에게 명백히 알려 주어야 한다.
- (3) 정신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미술심리상담사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내담자에 대한 치료 장소, 치료 유형, 또는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개인 면담 및 평가방법을 주의 깊게 선택하고 사용한다.
- (4) 미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정의할 때, 내담자가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한다. 내담자의 정신 장애를 진단할 때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아. 검사의 안전성

- (1) 미술심리상담사는 공인된 검사 또는 일부를 발행자의 허가 없이 사용, 재발행, 수정하지 않는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시대에 뒤진 자료나 검사 결과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쓸모없는 측정이나 검사 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미술심리상담사는 도와준다.

8. 윤리문제 해결

가. 자격관리위원회와 협력

- (1) 미술심리상담사는 본 윤리강령 및 적용 가능한 타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적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 (2) 미술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의 시행 과정을 돕는다. 미술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에 대해 자격관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한다.

나. 위반

- (1) 미술심리상담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을 때, 자격관리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특정 상황이나 조치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미술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에 대해 지식이 있는 다른 미술심리상담사, 해당 권위자 및 자격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 (3) 소속 기관 및 단체와 본 윤리강령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미술심리상담사는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윤리강령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 (4) 다른 미술심리상담사의 윤리위반에 대해 비공식적인 해결이 가장 적절한 개입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고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 (5)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자격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